

외국환거래약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외국환거래약정서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div>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 인 (인) 주 소</div> 본인은 ~ 확약합니다. (중간 기재생략)	외국환거래약정서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div>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 인 (인) 주 소</div> 본인은 ~ 확약합니다. (현행과 동일)	금감원 약관변경 권고에 의거 개정함
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~ 제 7조 (기재생략)	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~ 제 7조 (현행과 동일)	
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	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	
제 8 조~ 제 9조 (기재생략) 제 10조 매입대금상환 ① (기재생략) 1. ~2. (기재생략) 3.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4.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5. 본인이 화환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6.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	제 8 조~ 제 9조 (현행과 동일) 제 10조 매입대금상환 ① (현행과 동일) 1. ~2. (현행과 동일) 3 (②항 1호로 이동) 4.(②항 2호로 이동) 5.(삭제) 6 (②항 3호로 이동)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 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</p> <p>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 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.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,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</p>	<p>②(신설)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, 전자우편,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,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2.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 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 <p>③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 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.</p> <p>⑤ (번호 변경 및 내용 수정)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, 은행</p>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</p> <p>제 11조 (기재생략)</p> <p>제3장~ 제6장 (기재생략)</p>	<p>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</p> <p>제 11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3장~ 제6장 (기재생략)</p>	